

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17·12·28 조례 제1364호

제1조(「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계기”를 “규정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계기”를 “규정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하고, 제21조제1항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납골당”을 “봉안당”으로 하고, 별표 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1호 중 “납골당”을 “봉안당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이천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위임사무 중 위임사무명 (사회복지과)란 위임사무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 2. 중 “납골당”을 “봉안당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이천시 지역원로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역원로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청소년

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

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